

국회의원(추경호) 징계안

의안 번호	6281
----------	------

요구연월일 : 2024. 12. 6.

요 구 자 : 한창민 · 문정복 · 김재원
박은정 · 양문석 · 전종덕
민형배 · 정혜경 · 윤종오
김준혁 · 강경숙 · 권향엽
박홍배 · 김선민 · 김 윤
김우영 · 정동영 · 황정아
박민규 · 이광희 · 진선미
박정현 · 용혜인 의원
(23인)

주 문

국회의원 추경호를 「국회법」 제155조 제11호 및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헌법」 제46조 제2항과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추경호에 대한 「국회법」 제155조 제11호 및 제16호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하다. 필요한 사실관계와 근거는 아래에 서술한다.

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또한 「헌법」과 「계엄법」에 의할 때 국회의 활동을 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으로 구성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발표 행위, 이에 따른 경찰의 국회 봉쇄 및 군의 국회 진입은 「헌법」 제87조와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모여 「헌법」 제77조 제5항과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필요가 있었다.

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의 위기를 인지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되었다. 경찰의 봉쇄를 우회하여 국회에 도착한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추경호는 국회의장의 소집령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의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 그 결의를 곤란하게 할 의사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당사 3층으로 공지하여 자당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유도하였고,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라. 또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대표의 지시에 불응하며 국민의힘 당사 의원총회를 고수했다. 대표와 원내 대표의 지시사항이 상반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였고,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50여 인은 국회의원 박찬대 등 170인이 제출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추경호의 이 같은 방해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을 방조한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가 벌인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법」 제148조의3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권능 무력화를 기도하여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헌법」 제46조 제2항과 국회의원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이 모든 사
실을 고려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를 「국회법」 제155조 제11호
및 제16호에 따라 가장 중한 제명으로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법령]

헌법 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